##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3 발의연월일: 2021. 1. 29.

발 의 자:서정숙・김예지・이 용

김승수・조명희・조수진

조태용 • 전봉민 • 강기윤

김기현 · 양금희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이러한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① ~ ④ (생	에 대한 지원)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
	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
	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반
	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u>수 있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u>제5항</u> 에 따른 취학에 필요	<u>⑦</u> 제6항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